

부산광역시체육회
임원 보수규정

●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보수규정

제정 2021년 01월 28일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임원”이란 체육회 규약 제22조에 따른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를 말한다.

제 2 장 임원의 보수

제4조(보수 지급대상 및 지급액) 임원의 보수는 상근 임원에 한해서 [별표 1]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(보수지급일) 보수는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6조(보수계산) 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다.

1.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.
2. 보수의 일할계산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눈다.

제7조(퇴직금) ① 임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.

②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3장 임원의 실비보상

제8조(실비보상) ① 임원이 직무로 인하여 관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 (2021.01.28.)

제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임원의 보수표

(단위 : 원)

직 위	보 수	비 고
임 원	기준급*의 70% 이내	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

* 기준급이란, 해당연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(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)의 ‘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의 경우’ 연봉을 말한다.